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11.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99. 11. 22

다. 상 정 일 자 : '99. 11. 22

(제8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김 중 철

나. 개정사유

- IMF 이후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9. 9. 7 공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일선 읍면동의 복지분야 인력을 확충·강화함과 동시에 재직중인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승인한 일반직 사회복지정원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총정원의 증가 : 2명 (597→599)

년 도 별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과	비 고
2000 (7. 31까지)	643	627	16	집행기관 +2
2001 (7. 31까지)	621	606	15	
2002 (2001. 8. 1부터)	599	584	15	

- 2.3차년도(2000년, 2001년)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

3.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99. 9. 7 공포)에 의거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 채용계획」에 따라서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승인한 일반직 사회복지 정원을 조례에 반영 하고,
- 연차별 감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 확정 하는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 함으로써,
-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이나 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생 략'

첨 부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9. 11.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IMF 이후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9. 9. 7 공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일선 읍면동의 복지분야 인력을 확충·강화함과 동시에 재직중인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승인한 일반직 사회복지 정원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 연차별 감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매년 상반기에 확정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

2. 주요골자

- 총 정원의 증가 : 2명 (597→599)

년 도 별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과	비 고
2000 (7. 31까지)	643	627	16	집행기관 +2
2001 (7. 31까지)	621	606	15	'
2002 (2001. 8. 1부터)	599	584	15	'

- 2.3차년도 (2000년, 2001년)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

3. 관련근거

-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계획
(전남 자치 12110-2037, '99. 10. 7)
-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 시달
(전남 자치 12200-1840, '99. 9. 1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화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9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84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5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화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 지방공무원 정원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643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627 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6 명

[표 2] 지방공무원 정원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621 명
1. 집행기관의 정원	606 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5 명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 1」의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집행기관의 정원 2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 2」의 시행

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집행기관의 정원 21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집행기관의 정원 2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기재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97명</u> 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582명</u>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5명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599명</u> 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584명</u>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5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기재생략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현행과 같음)